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15 선고 2020가단2152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변 론 종 결 2022. 4. 1.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1. 체결된 주식회사 C 비상장주식 1,010주에 관한 증여계약을 11,275,2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75,2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1. 체결된 주식회사 C 비상장주식 1,010주에 관한 증여계약을 43,720,6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720,6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세무서장은 B에게 아래와 같은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① 2011. 1.경 ‘2010. 1. 19.경 성남시 중원구 D 임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11,347,1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② 2014. 5.경 ‘2009. 3. 26.경 위 E 외 7필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166,742,6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③ 2016. 4.경 ‘2010. 6. 4.경 위 F 외 1필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74,506,8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나. B는 2017. 2. 1.경 배우자인 피고와, B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0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B는 위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4. 25.경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조직변경을 한 후 해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조직변경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지분권 5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성남시 중원구 H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연인으로, 1세대에 동거하는 가족 중의 1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9. 2.경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되었고, 2019. 2. 28.경 조합으로부터 지분 환급금으로 11,275,237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 572,643,010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행위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소외 회사가 2018. 4. 25. 이 사건 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후 해산한 사실, 위 조직변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지분으로 변경되었다가 피고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에서 제명됨에 따라 2019. 2. 28.경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자체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가액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원고는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지분의 가치인 43,720,685원(= 1 출자좌수당 지분가치인 8,744,137원 × 5)이 가액배상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제명됨에 따라 2019. 2. 28.경 이 사건 환급금으로 11,275,237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더 이상 위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환급금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환급금인 11,275,237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위 11,275,2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1,275,237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과, 변론의 내용,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감정 비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이희경